

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7. . .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,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.
- 안 별표의 기타 공공요금의 개나리아파트란 중 “월별 고지 금액”을 삭제하고, 기타 공공요금의 비고란을 “개인별균등징수”로 한다.
-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,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한다.

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,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.

안 별표의 기타 공공요금의 개나리아파트란 중 “월별 고지 금액”을 삭제하고, 기타 공공요금의 비고란을 “개인별균등징수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,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 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	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	개정안과 같음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 각 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택난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생 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(이하 “임대아파 트”라 한다)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구미시가 설치한 구미시 근로 자임대아파트의 관리 ----- ----- 사항----- ----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명칭 및 위치) 임대아파트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 와 같다. 1. 금오아파트 : 구 미시 원평동 937-98	제2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 근로자임대아 파트(이하 “임대아 파트”라 한다)의 명 칭은 “개나리아파 트”로 하며, 위치는	제2조(명칭 및 위치) (개정안과 같음)

번지, 원평동 937-9
9번지, 신평동 150-
29번지, 신평동 150
-3번지

2. 개나리아파트 :
구미시 송정동 62번
지

제3조(관장) 임대아파
트는 구미시장(이하
“시장”이라 한다)
이 관장한다.

제4조(임주대상자) 임
대아파트 임주대상자
는 구미시 관내 각 기
업체에 근무하는 미
혼여성 근로자로 한
다. 다만, 시장이 특
별한 사유가 있다고
인정할 때에는 임주
대상자의 범위를 따
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임대허가) 임대
아파트를 임대 사용
하고자 하는 자는 시
장의 임대허가를 받
아야 한다.

구미시 박정희로 491
(송정동)에 둔다.

제3조(관리·운영) ---

----- 관리·운
영한다.

제4조(임주대상자) ---

----- 사업장에 근
무하는 만18세 이상
의 여성 근로자(이하
“근로자”라 한다)-
- . ----- 인정한 ---

-----.

제5조(임대허가 등) --
---- 사용하고자 ---

----- 하며,
임대허가 등에 관한
절차 및 세부사항은
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관장) 임대아파
트는 구미시장(이하
“시장”이라 한다)
이 관장한다.

제4조(임주대상자)
(개정안과 같음)

제5조(임대허가) 임대
아파트를 임대 사용
하고자 하는 자는 시
장의 임대허가를 받
아야 한다.

제6조(임대허가 제한)

시장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자에
대하여는 임대허가를
제한 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
을 동반하여 입주하
고자 하는 자
2. 전염병 또는 정신
질환자
3. 제7조 각호의 규
정에 의하여 임대허
가 취소처분을 받은
사실이 있는 자

제7조(임대허가 취소)

시장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행위를
한 자에 대하여는 임
대허가를 취소할 수
있다.

1. 허가없이 시설 및
구조물을 변경하거
나 건물 또는 기물
을 고의적으로 훼손
한 자
2. 입주증을 타인에
게 전매 또는 대여
하여 시설을 이용하

제6조(임대허가 제한)

----- 각 호의
어느 하나-----
----- 제한
할 -----.

1. 근로자 본인 외의
자를 -----

2. 감염병 -----

3. --- 각 호-----

제7조(임대허가 취소)

----- 임대아파트를
임대 또는 입주한 자
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-- 경우에-----
-.

1. -----

----- 경우
2. 근로자 본인 외의
자를 동숙시킨 경우

제6조(임대허가 제한)

시장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자에
대하여는 임대허가를
제한 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
을 동반하여 입주하
고자 하는 자
2. 전염병 또는 정신
질환자
3. 제7조 각호의 규
정에 의하여 임대허
가 취소처분을 받은
사실이 있는 자

제7조(임대허가 취소)

시장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행위를
한 자에 대하여는 임
대허가를 취소할 수
있다.

1. 허가없이 시설 및
구조물을 변경하거
나 건물 또는 기물
을 고의적으로 훼손
한 자
2. 입주증을 타인에
게 전매 또는 대여
하여 시설을 이용하

거나 시장이 인정하
지 아니한 자를 동
숙시킨 자

3. 시설내에서 음주
또는 도박행위를 하
거나 풍기문란을 하
게 한 자

4. 타인의 물건을 절
도하거나 타인을 기
만하여 경제적 손해
를 가한 자

5. 타 사업장으로 전
직한 자. 다만, 전
직된 사업장에서 재
추천을 받은자는 제
외한다.

6. 임대료등을 2월이
상 체납한 자

7. 시장의 지시명령
을 위반하거나 불응
한 자

8. 기타 임대아파트
입주에 부적합하다
고 판단된 자

제8조(임대료등 납부
및 환불) ①임대아파
트에 입주한 자는

3. 임대아파트 내---

- 풍기문란 행위를
한 경우

4. -----
----- 기망하
여 -----
-- 경우

5. 구미시 관외 사업
장으로 전직한 경우

6. 임대료등을 2개월
이상 체납한 경우

<삭 제>

8. 그 밖에 계약사항
을 이행하지 않거나
이 조례의 규정을
위반한 경우

제8조(임대료등 납부)
임대아파트를 사용하
는 자는 별표에 따른

거나 시장이 인정하
지 아니한 자를 동
숙시킨 자

3. 시설내에서 음주
또는 도박행위를 하
거나 풍기문란을 하
게 한 자

4. 타인의 물건을 절
도하거나 타인을 기
만하여 경제적 손해
를 가한 자

5. 타 사업장으로 전
직한 자. 다만, 전
직된 사업장에서 재
추천을 받은자는 제
외한다.

6. 임대료등을 2월이
상 체납한 자

7. 시장의 지시명령
을 위반하거나 불응
한 자

8. 기타 임대아파트
입주에 부적합하다
고 판단된 자

제8조(임대료등 납부
및 환불) ①임대아파
트에 입주한 자는

[별표]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이미 납부한 임대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손해배상) 입주자가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관리) ①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아파트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손해배상) 임대아파트의 ----- 허가없이 변경하거나 ----- 훼손한 자-----

제10조(위탁관리) ①시장은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별표]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이미 납부한 임대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손해배상) 입주자가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관리) ①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아파트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, 수탁자책임,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매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임대아파트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과 위탁업무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아파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」 및 「구미시 공유재산관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, 수탁자책임,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매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조사업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리 조례」에 따른다. 제11조(공동전기료 지원) 시장은 임대아파트 공동시설물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제12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에 ----- --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공동전기료부터 적용한다.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구미시근로 청소년임대아파트설	제11조(보조사업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 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개정안과 같음)
---	---	--

치 및 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